

동 지침은 기본 가이드라인으로서 해당 부처·기관·사업장 등 사정에 따라 적합하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

- 3판 -

2020. 2. 6.

본 지침은 감염병 발생동향 등에 따라
지속 업데이트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산업보건과



목 차



- I.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개요 1
 - 1. 법적 근거 1
 - 2. 임상적 특성 1
 - 3. 진단 1
 - 4. 치료 1
 - 5. 예방 2
- II. 대응 방안 3
 - 1. 목적 3
 - 2. 기본방향 3
 - 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사항 ... 4
 - 가. 노동자 위생관리 강화 및 사업장 청결·소독 유지 4
 - 나. 사업장 내 감염유입 및 확산 방지 5
 - 다. 사업장 내 의심 또는 확진 환자 발견 시 7
 - 라. 전담체계 구축 및 대규모 결근 대비 사업계획 수립 8
 - 마. 확진환자 및 접촉자 등에 관한 휴가 및 휴업관리 9
 - 바. 특수건강진단 실시 주기 유예 9

<참고·붙임 목록>

- 참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에 대한 보건당국의 조치사항 11
 - 부록1) 생활수칙 안내문(노동감시) 14
 - 부록2) 자가격리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 15
 - 부록3) 자가격리대상자의 가족 및 동거인을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 16
- 붙임1) 감염병 예방 수칙 17
- 붙임2) 카드 뉴스 19
- 붙임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수칙 포스터 23
- 붙임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Q & A 24
- 붙임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대응지침 37

1 법적 근거

- 중국 후베이성 등에서 보고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은 임상양상, 역학적 특성에 대한 정보가 구체적으로 밝혀질 때까지 '제1급 감염병 신종 감염병 증후군'을 적용하여 대응

2 임상적 특성

- 주 증상으로는 발열(37.5℃ 이상) 및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 잠복기: 현재 정확한 잠복기 보고되지 않았으나 일반적인 코로나바이러스 계열을 준용하여 최대 잠복기 14일로 적용하여 관리

3 진단

- 실시간 유전자 검출 검사(Real-time RT-PCR)으로 진단 가능

4 치료

- 현재까지 치료를 위한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어있지 않으며 치료는 증상에 따른 대증치료 실시

5 예방

○ 감염병 예방 행동 수칙

-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
 - * 비누가 없으면 알코올 손 세정제를 사용
- 기침, 재채기 시 옷소매 등으로 입과 코를 가리기
- 기침 등 호흡기 증상자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기
- 의료기관 또는 선별진료소 방문 시 해외 여행력 알리기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않기
-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의 접촉 피하기

○ 중국지역 출장(체류) 시 예방수칙 준수

- 가급적 외부활동* 자제
 - * 현지 시장 및 의료기관 방문 등
- 손 씻기 및 기침 예절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하기
- 발열, 호흡기 증상 시 선별진료소 방문 또는 관할 보건소, 지역 120 콜센터, 1339콜센터 상담
- 출장 중 동물과 접촉하지 않기
- 발열, 호흡기 증상자(기침, 인후통 등) 접촉하지 않기

1 목 적

- 본 지침은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될 경우를 대비하여 사업장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전파 및 확산을 방지하여,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임.

2 기본 방향

- 사업장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결근 노동자의 동향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의심 등 전염병 증상을 나타내는 소속 노동자(하도급, 파견, 용역노동자 포함)의 발생 동향을 철저히 파악한다.
- 사업장의 경영자는 소속노동자(하도급, 파견, 용역노동자 포함)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격리대상자 포함)가 발생하면 즉시 적절한 격리가 이뤄지도록 조치한다.
- 보건관리자(보건관리대행기관 포함) 등 보건업무 담당자는 본 지침 내용을 소속 노동자(하도급, 파견, 용역노동자 포함)에게 철저히 교육하고 이행상태를 확인한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행에 대비하여, 사업장 차원에서 경영유지 및 업무 지속을 위한 전담부서 또는 전담자를 지정하고 대비·대응계획을 수립한다. 이때 사내 협력업체를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토록 한다.

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사항

가. 노동자 위생관리 강화 및 사업장 청결·소독 유지

○ 개인위생 관리를 강화한다.

- 손씻기와 관련하여 개수대를 충분히 확보하고 손 세척제(비누 등) 또는 손 소독제, 일회용 수건이나 화장지 등 위생 관련 물품을 충분히 비치하여 노동자들의 개인위생 실천을 유도한다.
- 기침 예절을 준수하여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 등으로 입과 코를 가리도록 안내한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방지를 위한 행동요령(붙임 1)

- 비누를 이용하여 물에 30초 이상 꼼꼼히 자주 손 씻기
-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반드시 기침 예절 준수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옷소매 등으로 입과 코를 가리기
 - 호흡기증상으로 의료기관 방문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방문시 마스크 착용
- 눈·코·입 만지지 않기
- 중국 여행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폐렴이 발생할 경우 보건소 신고

- 보호구 및 위생관련 물품*의 부족 또는 공급혼선에 대비하여 사전에 물품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한다.

* 마스크(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와 접촉 우려가 있는 경우 KF94, KF99, N95 등 마스크, 그 외의 경우 보건용 마스크 등), 비누, 손세정제, 핸드타월, 화장지, 소독용 세제, 체온계 등

○ 노동자 및 고객(방문객)을 대상으로 개인위생 실천방안을 홍보한다.

- 사업장 내 전파 방지를 위해 노동자 및 고객(방문객) 대상으로 기본적인 개인위생 실천방안(손 씻기, 기침 에티켓 등)을 홍보한다.
- 사업장, 영업소 등의 샤워실·세면대 등에 홍보 안내문이나 포스터 등을 부착한다.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 자료 등을 활용

- 사업장 내 청결을 유지한다.
 - 세면대, 문손잡이, 난간, 개수대 등 사업장 내 청결·소독*을 유지한다.
 - * 소독제는 현재 식약처에 허가된 소독제(락스 등 염소계 소독제, 알콜 성분 소독제 등)를 사용할 수 있으며, 제조사에서 제시한 희석배율과 접촉시간, 취급 주의사항 등의 권장사항을 따라야 함
 - 컵·접시·스푼 등 공동사용 금지, 휴게실·대기실 등에 비치된 잡지·신문 제거, 주기적으로 실내 환기 실시
- 사업장이 운영하는 기숙사 등의 주변 가구와 방을 청결히 하고, 침구류, 수건류를 분리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 통근버스를 운영하는 경우 통근버스를 자주 소독하는 등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버스 안에서 기본적인 기침 예절 등이 준수될 수 있도록 노동자를 교육한다.

나. 사업장 내 감염유입 및 확산 방지

- 발열,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는 노동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까운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도록 권고한다.
 - 감염병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여 건강을 보호한다.
- 중국 출장 등을 실시하는 노동자에 대한 출장 전·후 관리를 강화한다.
 - 중국 출장을 계획 중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감염 예방수칙, 여행국가 환자 발생상황, 해외에서의 주의사항, 귀국 후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적극 교육한다.
 - 노동자로 하여금 입국 시,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강상태질문서에 사실 그대로 정확하게 기술하고, 검역관에게 설명토록 한다.

*** 여행 건강(Travel Health)**

최근 해외여행을 다녀오거나 해외에서 입국하였습니까? 열, 심한 기침, 호흡곤란, 혹은 몸이 아픈 증상이 있습니까?

☞ 증상이 있을 때 의사의 진료를 받으십시오.

- 의사의 진료를 받을 때 증상과 해외에 체류했었는지 질문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말하십시오.
- 기침이나 재채기 할 때 티슈 또는 옷소매로 코와 입을 막으십시오.
- 사용한 화장지는 가까운 휴지통에 버리고 비누와 물로 손을 씻으십시오.

○ 최근 14일 이내 중국에서 입국하여 복귀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국내 입국 후 14일째 되는 날까지 타인과의 접촉이나 외부활동을 자제하고 예방 및 감염확산을 사전에 대응하기 위해서 가급적 휴가, 재택 근무 또는 휴업 등을 활용하도록 한다.

- 특히, 전염 확산 가능성이 큰 집단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자체 발열 모니터링 등을 통해 확산 징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 (집단시설) 학교, 사업장, 청소년·가족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등

** (다중이용시설) 도서관, 미술관, 공연장, 체육시설, 쇼핑센터(대형마트·시장·면세점·백화점 등), 영화관 등

○ 의료기관*, 항공사, 대형마트 및 운수업 등 고객을 응대하는 서비스 업종은 사업장 특성을 반영하여 자체점검, 대응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 청소, 세탁, 간병인, 청원경찰 등 병원협력업체 포함

- 사업주는 고객을 응대하는 노동자가 감염 예방을 위하여 손소독* 및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독려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위생용품을 비치한다.

* 의료기관 등에서 환자를 대하거나 가검물 등을 취급하는 경우 외에, 고객을 응대하는 노동자의 경우 오염된 장갑을 즉시 교체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면 병원체 전파 우려가 있어 장갑 착용보다는 손씻기 및 손세정제(알코올 세정제)를 활용하여 개인 위생관리 실시

다. 사업장 내 의심 또는 확진 환자 발견 시

- 사업장에서 의심환자* 발견시 증상 유무 확인 및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즉시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신고하도록 한다.

* 중국을 방문했거나, 의심환자와 접촉 또는 확진 환자가 발생한 병원 등에 다녀온 후 발열(37.5℃이상) 및 호흡기 증상 등이 있는 경우

- 이때 해당 노동자와 접촉한 노동자가 있다면 보건소의 검사와 역학 조사가 이뤄질 때까지 이동하지 말고 사업장 내 격리장소*에서 개인보호구** (마스크, 일회용장갑 등)를 착용하고 보건소 담당자를 기다린다.

* 임시 격리공간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보건소 지시사항에 따라 수행

** 보건소 담당자 도착 전, 의심환자와 접촉하는 담당자도 마스크 착용

- 의심환자의 보건소 이송 이후에는 개인보호구(마스크, 일회용장갑 등)를 착용 후 알콜, 락스 등 소독제를 이용하여 환자가 머물렀던 격리 장소를 소독하도록 한다.
- 보건당국에 의해 자가 격리 대상으로 선정된 노동자 또는 접촉자에 대해서는 출근하지 않고 우선으로 관리자에게 보고 후 병원 또는 자가 격리토록 조치한다.

- 사업장에서 확진 환자*가 확인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사업장 내 모든 노동자**에게 알려야 한다.

*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 해당 사업장을 방문한 고객 등이 확진 환자로 확인된 경우를 말함.

** 사업장 내에서 함께 근무하는 협력업체, 파견, 용역업체 노동자 포함

- 사업주는 확진 환자에 대한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반의 심층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한다.

- 확진 환자의 이동 동선 소독 등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조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는 적극 협조한다.
- 확진 환자가 머물렀던 장소*와 시간 등 이동 동선이 명확히 분리되는 시공간에서 근무한 노동자에 대한 능동감시는 보건소의 조치에 따른다.
- * 직업장, 휴게실, 식당, 고객·방문자 등이 방문한 장소 등 사업장 내 모든 장소를 말함

라. 전담체계 구축 및 대규모 결근 대비 대응계획 수립

- 사업장 차원에서 대응·대비계획을 수립하여 업무를 수행할 전담부서 또는 담당자를 지정한다.
 - 유행 확산 시 사업장의 주요 분야의 업무를 지속하기 위해 주요 인력·기술 등 현황을 파악한 후 비상시에 대비한 ‘업무 지속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점검한다.
 - 동 계획 수립 시 사내에 함께 근무하는 협력업체·파견·용역 업체 노동자를 포함한다.
- 확진자 발생 또는 의사환자 발생에 따른 결근을 대비하여 사업 계획을 수립한다.
 - 대규모 결근 사태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전에 노동자들의 신상정보를 파악하고, 노동자 관리대책을 마련한다.
 - * 본인감염, 환자간호, 휴교로 인한 자녀돌봄 등의 사유 등이 가능
 - 결근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업무 재편성 계획을 수립*한다.
 - * 대체근무조 편성, 대체근무지 지정, 근무시간 조정, 재택근무 등
 - 감염자에 대한 보수·휴가 규정 및 회복 후 업무 복귀 절차를 마련한다.

마. 확진환자 및 접촉자 등에 관한 휴가 및 휴업 관리

- 「감염병예방법 제 41조의2」에 따라 입원·격리되는 경우에는 국가에서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며, 이 경우 사업주는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 참고 > 「감염병예방법」 상 유급휴가 지원 규정

- △ **법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 **시행령 제23조의2(유급휴가 비용 지원 등)** 법 제41조의2제3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주는 유급휴가 지원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근로자가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메르스의 경우, 지원비용이 지급된 바 있음.

- 또한, 「감염병예방법」 상 입원·격리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휴가*, 재택근무 또는 휴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적극 지도한다.

* (휴가) ①단체협약·취업규칙 상 유급병가 등 규정이 있는 경우 유급병가 등 부여, ②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자발적으로 유급병가 등 권고

** (휴업) 근로자의 휴가 신청이 없으나 사업주 자체판단으로 휴업 시, 휴업수당 지급 필요(단, 정부의 격리조치 등 불가항력으로 휴업시 휴업수당 미발생)

바. 특수·배치전건강진단 실시 주기 유예

- 다음에 해당하는 노동자는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가 해제되는 시점까지 특수·배치전건강진단을 유예한다.

* '20. 1. 27. 기준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3단계(경계)임

- “폐기능 검사” 등 검사 중 비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검사*를 받아야 하는 노동자의 특수·배치전건강진단 일체

* 폐기능 검사(폐활량검사, 작업 중 최대호기 유속연속측정, 비특이기도 과민검사), 객담세포검사

- 건강진단 당일 발열이나 호흡기 이상 증상이 있는 노동자

- 특수건강진단관련 의료종사자가 노동자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소독제 및 손씻기 등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 감염을 예방하도록 한다.

◆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등 대상사업장은 질병관리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유행대비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등 대응 지침”을 참고 (붙임5)

참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에 대한 보건당국의 조치사항

* 질병관리본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지침 (4판) 에서 발췌

※ 질병관리본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지침을 개정하는 경우 그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보완할 예정

1. 환자 및 의사환자 관리

① 확진환자

○ 의사환자 중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진단검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유전자(PCR) 검사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검사법 정립 전까지는 판코로나바이러스 검사

○ (조치사항)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이송 및 입원 치료

② 의사환자

○ 중국 후베이성*(우한시 포함)을 다녀온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최근 14일 이내에 중국 후베이성(우한시 포함) 방문

+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 우한[Wuhan, 武漢], 스옌[Shiyan, 十堰], 상양 [Xiangyang, 襄陽], 징먼 [Jingmen, 荊門], 샤오간[Xiaogan, 孝感], 황강[Huanggang, 黃岡], 어저우 [Ezhou, 鄂州], 황스[Huangshi, 黃石], 셴닝[Xianning, 咸寧], 징저우 [Jingzhou, 荊州], 이창[Yichang, 宜昌], 쉐이저우[Suizhou, 隨州], 선농자임 [Shennongjia, 神農架林], 텐먼[Tianmen, 天門], 첸장[Qianjiang, 潛江], 셴타오[Xiantao, 仙桃], 언스투자주묘오족자치주[Enshi Tujia and Miao, 恩施土家族苗]

** 발열: 37.5 ℃ 이상

○ 확진 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최근 14일 이내에 확진환자와 접촉한 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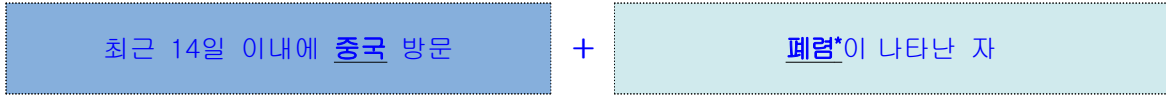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 (조치사항)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이송, 및 검사, 입원 치료

③ 조사대상 유증상자

-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폐렴*이 나타난 자

* 영상의학적으로 확인된 폐렴



-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이송, 및 검사, 입원 치료

④ 의사환자 또는 조사대상 유증상자가 아니지만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 중국(후베이성 제외) 방문 후 14일 이내 폐렴이 아닌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는 자
- 최종 노출일(중국방문)로 부터 14일간 「능동감시 생활수칙안내문(부록1)」에 따라 능동감시하며 「자가격리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부록2)」, 「자가격리대상자의 가족 및 동거인을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부록3)」을 준수

2. 접촉자 관리

① 확진 환자와의 접촉자

- ◆ 확진 환자의 증상 및 마스크 착용 여부, 노출력 등을 고려하여 접촉자를 구분하며, 질병관리본부의 지휘 하에 시도 및 시·군·구 역학조사반에서 확진 환자 접촉자 조사
- ◆ WHO 접촉자 예시
 - 의료처치 관련 노출(보호복 착용여부 고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환자와 근거리에서 함께 일을 하거나 환자의 학우(같은교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환자와 자동차, 기차, 비행기 등 각종 이동수단을 함께 이용한 경우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환자의 동거인

-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 및 능동감시

- 의학적 처치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아니면 자가격리(또는 시설·병원격리)를 원칙, 보건소장은 접촉자에게 격리통지서 발부

- 역학조사 실시일로부터 능동감시 해제 시까지 매일 2회 유선 연락하여 발열 및 호흡기 증상여부 확인(‘능동감시 생활수칙 안내문 부록1’ 참조)

② 의사환자와의 접촉

- 의사환자 또는 조사대상 유증상자와의 접촉자 조사
- 접촉자 중 증상이 나타날 경우 보건소 또는 선별진료 의료기관에서 진료

3. 격리해제 조치

① 격리해제 기준

-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 음성일 경우
- (확진환자) 회복 후 검체 검사 결과가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일 경우

② 격리해제 확인

- 검사결과 음성 확인 후 격리해제
-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 격리해제 시 의료기관 및 보건소는 잠복기 동안의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귀가조치

* 14일내 증상 악화 시 1339 또는 보건소 문의 안내

③ 접촉자 모니터링 해제

- 확진환자의 접촉자는 최종접촉일로부터 14일 동안 능동감시 및 자가격리 지속 후 해제

* (예시) 최종접촉일(2.1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16일 해제

- 이 안내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을 조기에 발견하고 감염 예방 조치를 위해 **확진환자와 접촉하여 '능동감시'가 필요한 분에게** 제공됩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발생상황 등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능동감시 기간동안 관할 보건소가 연락하여 증상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귀하의 **중국 최종 체류일로부터 또는 확진환자와 접촉 후 14일이 경과하는 날까지** 아래의 방법으로 자가모니터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가모니터링 기간 동안 감염 예방을 위한 생활수칙

- 평상시와 같이 외출, 출근, 등교 등 일상 생활을 하시면 됩니다.

- 건강 수칙을 지켜주세요.

- 손위생(손씻기 또는 손소독)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주세요.
- 기침이 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 마스크가 없다면 소매로 가려 기침하며, 기침, 재채기 후 손을 씻거나 손소독 합니다.

- 자가모니터링

- 자가모니터링은 어떻게 하나요?

- 매일 아침, 저녁으로 체온을 측정하고 호흡기증상 등 감염 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건강상태를 체크합니다.
- 보건소에서 하루에 1회 이상 연락드리며, 이때 감염 증상을 알려주십시오.

- 어떤 증상이 나타날 수 있나요?

- 발열(37.5 °C 이상),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 폐렴이 주요 증상입니다.

☞ 위의 증상이 생기거나 심해질 경우 먼저 관할보건소와 상의하시거나 질병관리본부 콜센터(국번없이 ☎ 1339)로 알려주십시오.

※ 담당보건소: _____ 담당자: _____ 긴급연락처: _____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장소 외에 외출 금지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 방문은 닫은 채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 시키기
- 식사는 혼자서 하기
-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 사용하기 (공용으로 사용 시, 사용 후 락스 등 가정용 소독제로 소독하기)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하기**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기

- 불가피할 경우, 얼굴을 맞대지 않고 마스크를 쓴 채 서로 2m이상 거리 두기



개인물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 사용하기

- 의복 및 침구류 단독세탁
- 식기류 등 별도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 다른 사람 사용 금지



건강수칙 지키기

- 손씻기, 손소독 등 개인위생 철저히 준수
- 기침이 날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
- 마스크가 없을 경우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 기침하기, 기침 후 손씻기·손소독 하기

**능동감시 기간 동안 관할 보건소가 연락하여 증상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확진환자와 접촉 후 14일이 경과하는 날까지 자가 모니터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가모니터링 방법

- ☑ 호흡기증상 등 감염 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건강상태 확인
- ☑ 매일 아침, 저녁으로 체온 측정하기
- ☑ 보건소에서 1일 1회 이상 연락 시, 감염 증상 알려주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주요 증상

- ☑ 발열(37.5°C 이상)
- ☑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
- ☑ 폐렴



자가격리대상자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최대한 자가격리대상자와 접촉하지 않기

- 특히 노인, 임산부, 소아, 만성질환, 암 등 면역력이 저하된 분은 접촉 금지! • 외부인 방문 제한



불가피하게 자가격리대상자와 접촉할 경우 마스크를 쓰고 서로 2m 이상 거리 두기



자가격리대상자와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자주 환기 시키기



물과 비누 또는 손세정제를 이용하여 손을 자주 씻기



자가격리대상자와 생활용품(식기, 물컵, 수건, 침구 등) 구분하여 사용하기

- 자가격리대상자의 의복 및 침구류 단독세탁
- 자가격리대상자의 식기류 등은 별도로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 다른사람 사용 금지



테이블 위, 문 손잡이, 욕실기구, 키보드, 침대 옆 테이블 등 손길이 많이 닿는 곳의 표면 자주 닦기



자가격리대상자의 건강상태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주요 증상

- ✓ 발열(37.5°C 이상)
- ✓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
- ✓ 폐렴

1. 유의사항

□ 생활속 예방수칙

- ▶ 비누를 이용하여 물에 30초 이상 꼼꼼히 자주 손* 씻기
* 손바닥, 손등, 손가락 사이, 두 손 모아, 엄지 손가락, 손톱 밑 등
- ▶ 평소 손 씻기를 생활화하며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기 말기
- ▶ 외출 후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다녀오신 후에는 반드시 손 손씻기
- ▶ 기침, 재채기 시 옷소매 등으로 입과 코를 가리기
- ▶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기

□ 의료기관 이용시 준수사항

- ▶ 특히,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
- ▶ 가벼운 질병은 거주지 인근 의료기관 이용하며 중증 환자 외에 대형의 료기관 이용을 자제
- ▶ 비응급 상황에서는 응급실 내원을 자제
- ▶ 의료기관 내원시, 의료진의 질문에 정확하게 답하고 안내에 잘 따를것

□ 병문안 등 의료기관 방문시 준수사항

- ▶ 되도록 병문안 자제, 특히 노약자의 경우에는 병문안을 삼가도록
- ▶ 병문안할 때 마스크 착용, 철저한 손위생 등 개인위생에 만전을 기할 것
- ▶ 병문안 후, 보건요원 등의 문의와 조사가 있을 경우, 이에 정직하게 응하기

2. 감염병 예방수칙(올바른 손씻기와 기침예절)

비누로 꼼꼼하게
30초 이상

[올바른 손씻기 6단계]



**올바른 손씻기와 기침예절로
많은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기침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올바른 기침예절]



2020.01.21



1339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해외여행 다녀왔는데 발열과 기침이 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8

2020.01.21



해외여행 다녀온 지 일주일이지났는데..
열이 나고, 기침을 해요...
무슨 병인지 몰라서 두려워요.. ㅜ ㅜ



2/8

2020.01.21

해외여행 후 발열과 기침 때문에 걱정하셨나요?
그럴 땐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에 연락하세요.

질병관련 정보와
상담 서비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감염병에 대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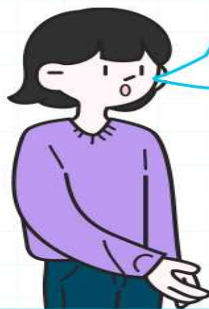
모든 감염병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3/8

2020.01.21

**주요 감염병 상담부터
질병관리본부 업무 민원 상담까지!**

감염병 관련하여 궁금한게 많은데
다 질문해도 되나요?



Q 어떤 것을 안내 받을 수 있나요?

- 주요 감염병(메르스 등)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상담·조치사항 안내
- 해외여행 입·출국자에 대한 감염병 정보, 필수 예방접종, 예방법 등 안내
- 법정 감염병 정보 및 예방법, 발생 신고 기준 및 절차 등 안내
- 질병관리본부 업무에 관련된 민원 상담 및 담당자 연결

4/8

2020.01.21



365일 24시간 국내-해외 모두 상담 가능한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



중국에서 감기 걸렸는데 혹시
저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일까요?



Q 업무시간은요...? 외국에서도 상담 가능한가요?

365일 24시간 상담 가능하며,
상담원 연결이 지연될 경우
상담 가능한 번호 알려주시면 추후 연락 드립니다.
해외에서는 +82-2-2663-1339번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5/8

2020.01.21



If you are a foreigner even, don't worry. Please call at 1339 Call center!



Can I ask you something?



Q 외국인도 이용 가능할까요?

1339 콜센터와 상담을 원하는 국내 체류 외국인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와 3자 통화로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1345 상담 가능 시간(20개국어)
09:00~22:00 한국어 중국어 영어 | 09:00~18:00 베트남어, 태이어, 일본어 외 17개 언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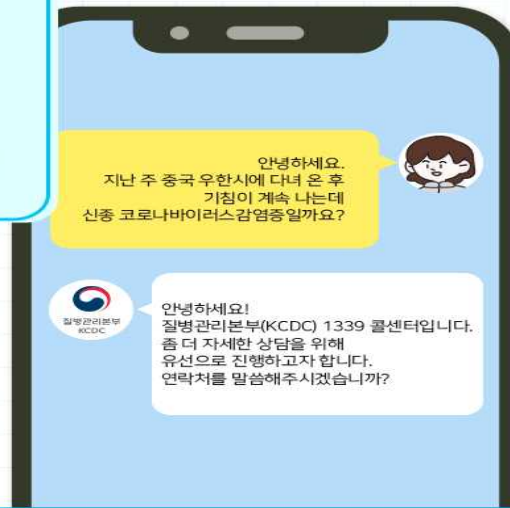
6/8

2020.01.21

전화가 어렵다면, 카톡으로 상담받으세요!

카카오톡채널에서
KCDC 질병관리본부
채널 추가하고

실생활에 필요한
질병·건강정보도 받고
언제 어디서나 1:1 상담 가능!



7/8

2020.01.21

질병관리본부 1339콜센터는
설 연휴에도 감염병 및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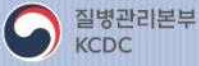
**감염병 피해 최소화를 위해
손씻기, 기침예절 실천
호흡기 증상 시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세요!**

질병정보 궁금할 때
감염병이 의심될 때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8/8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수칙

감염병 예방 수칙



손바닥, 손톱 밑
비누로 꼼꼼하게 손씻기!



기침할 땐
옷소매로 가리기!



기침 등 호흡기증상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의료기관 방문 시 필수)



선별진료소* (의료기관) 방문 시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 알리기

*선별진료소 안내: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확인,
관할보건소 또는 지역번호+120, 1339 문의



감염병이 의심될 땐
관할보건소 또는 1339,
지역번호+120 상담

중국 여행 시 주의사항



동물 접촉 금지



현지 시장 및 의료기관 방문 자제



발열, 호흡기증상자(기침, 인후통 등)
접촉 금지



· 기침시 마스크 착용
·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



· 중국 여행 후 입국 시 건강상태질문서 제출
· 귀국 후 발열과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발생 시 관할보건소 또는 1339,
지역번호+120 상담

* 감염병 발생 정보 확인 : [해외감염병 NOW](#) 에서!

발행일 : 2020.1.29

중국 우한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Q&A

<여행 관련>

Q1.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유행하고 있는데 중국 여행을 가도 되나요?

- 대한민국정부는 최근 여행경보 단계를 조정하여 중국 후베이성은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 1.25일 기준), 전 중국지역* 은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 1.28일 기준)를 발령하였습니다.

* 홍콩·마카오 포함, 대만 제외

- WHO에서는 중국을 여행 제한구역으로 권고하고 있지는 않으나, 중국 여행을 계획 중이시라면 질병관리본부 '해외감염병NOW' 에서 제공되고 있는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다음과 같은 '국민 감염 예방 행동 수칙'을 알려드립니다.

<국민 감염 예방 행동 수칙>

-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
 - 특히, 외출하거나 의료기관 방문 시 착용
-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자주 손 씻기
- 눈·코·입 만지지 않기
- 마스크가 없으면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 해외 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리기
- ※ 후베이성(우한시 포함) 등 중국 여행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발생할 경우
 - 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문의
 -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
 - ③ 의료진에게 반드시 해외여행력 알리기

**Q2. 중국 여행 시 감염예방을 위해 지켜야 할 사항은 무엇
인가요?**

- (방문 전) 질병관리본부 '해외감염병NOW'에서 발생 정보 및 감염병 예방 수칙을 확인해주세요.
- (방문 중)
 - 가금류,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피해주세요.
 - 호흡기 유증상자(발열, 호흡곤란 등)와의 접촉을 피해주세요.
 - 현지 시장 등 감염위험이 있는 장소 방문을 자제해주세요.
 - 손씻기, 기침 예절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켜주세요.
- (방문 후)
 -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발생하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24시간 상담가능) 또는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의심 증상으로 진료를 받고자 하실 경우는 지역 내 선별 진료소를 우선으로 방문하시고,
 - 진료 전 의료진에게 반드시 해외여행력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국민 감염 예방 행동 수칙>

-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
 - 특히, 외출하거나 의료기관 방문 시 착용
-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자주 손 씻기
- 눈·코·입 만지지 않기
- 마스크가 없으면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 해외 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리기
- ※ 후베이성(우한시 포함) 등 중국 여행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발생할 경우
 - 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문의
 -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
 - ③ 의료진에게 반드시 해외여행력 알리기

Q3. 후베이성(우한시 포함) 등 중국 여행을 다녀온 후 주의 사항은 무엇인가요?

- 중국 후베이성(우한시 포함) 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중 어느 하나라도 있을 시 반드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또는 보건소와 상담해 주시고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반드시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증상 발생 시 타인 접촉을 최소화하고, 마스크 착용, 기침예절, 손씻기 등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Q4. 후베이성(우한시 포함) 등 중국 여행을 다녀온 후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어디로 문의해야 하나요?

- 중국 후베이성(우한시 포함)을 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중 어느 하나라도 나타나면 반드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또는 보건소와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Q5. 중국에서 발생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원인, 증상은 무엇인가요?

- 원인병원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알려져 있으며, 증상은 발열 및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폐렴 등)이 주로 나타납니다.

<감염예방관련>

Q6. 마스크는 어떤 것을 써야 하나요?

- 일상생활에서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마스크의 기준은 따로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다.
- WHO 권고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의심환자 진료 또는 이송 시 보건의료인(의료진, 이송요원 등)에 대해서는 KF94(N95) 또는 동급의 호흡기보호구를 착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 마스크 사용 시 예방 효과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일반 마스크를 착용하더라도 자주 교환하여 사용하여주시기 바랍니다.

Q7. 감염 예방차원에서 주변 환경을 소독하고 싶는데 어떤 방법이 있나요?

- 환경소독제는 낮은 수준의 소독제로, 차아염소산나트륨(락스), 알코올, 페놀화합물(phenolic compounds), 4급 암모늄화합물, 과산화물(peroxygen compounds) 등이 적절하며, 환경소독제 사용 시 희석배율, 접촉시간, 취급 시 주의사항 등 제조사 권장사항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 차아염소산나트륨(락스)을 사용할 경우 시중에 판매하는 락스의 농도를 확인하여 유효염소농도를 0.05% 또는 500 ppm으로 희석하여 사용하되, 희석방법, 희석 후 유효기간 등은 제조사 권고사항을 참조하셔야 합니다.

Q8. 손소독제는 어떤 것을 사용해야 하나요?

- 손을 통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를 사용하여 손 씻기를 권고합니다. 다만, 손을 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한 손소독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검사 관련>

Q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은 진단법이 있는지요?

- 질병관리본부와 18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판코로나바이러스 검사법과 염기서열분석으로 진단이 가능하며 최근 실시간 유전자 검출 검사법을 개발하여 더욱 신속히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Q10. 검사결과를 확인하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 기존에는 1~2일 소요되었으나, 1월31일부터 새롭게 개발한 실시간 유전자 검출 검사법으로 검사시간을 6시간*으로 단축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검사진행에 소요되는 시간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Q11. 검사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 현재까지는 질병관리본부와 18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진단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검사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Q12. 이번에 양성 판정된 코로나바이러스는 어떻게 확인하셨나요?

- 질병관리본부가 기 구축한 판코로나바이러스 검사법(Conventional PCR)에서 양성을 확인하였습니다.
- 또한 유전자의 염기서열을 분석한 결과, 중국에서 공개한 신종(우한) 바이러스(6종)와 100% 일치함을 확인하였습니다.

Q13. 향후 검사 확대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 향후 조속히 민간 의료기관(검사기관 포함)에서도 검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Q14. 중국을 방문한 후에 증상은 없지만 검사로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나요?

- 증상이 없는 경우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으나, 감염병에는 잠복기가 있어 이후에 증상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중국 여행 후 14일 이내 증상이 나타나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또는 보건소와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원 및 전파 관련>

Q1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은 어떻게 전염되나요?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전파경로는 비말(침방울) 및 호흡기 분비물(콧물, 가래 등)과의 접촉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기침, 재채기를 했을 때 공기 중으로 날아간 비말이 다른 사람의 호흡기로 들어가거나, 손에 묻은 바이러스가 눈·코·입 등을 만질 때 점막을 통해 바이러스가 침투하여 전염이 됩니다.

Q16.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은 사람간 전염이 되나요?

- 중국 내 가족 간 감염 사례, 의료진 감염 사례 등이 보고되고 있으며, 우한시 내에서는 3~4차 감염까지 보고되고 있습니다.

Q17. 중국 초기 보도내용은 제한된 사람 간 감염만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는데, 현재 상황은 이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떠한 판단인가요?

- 현재까지 발생상황은 중국 우한시에서 시작된 유행이 지속되어 중국 전역으로 확대되는 양상으로, 가족간 전파 및 병원내 의료진 집단감염 발생이 보고되는 등 사람간 전파의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Q18. 화난 해산물 시장 외 다른 감염원의 가능성이 제기되는가?

- 초기와는 달리 현재 화난 해산물시장 방문력이 확인되지 않은 환자들이 보고되고 있어 다른 감염원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검역 관련>

Q19. 중국을 방문하고, 입국할 경우 검역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요?

- 입국장에서 발열감시카메라를 통한 발열검사 및 건강상태질문서를 확인하며 발열, 호흡기(기침, 인후통 등) 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고려하여 격리조치대상에 해당되면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으로 이송합니다.

Q20 중국 후베이성(우한시 포함) 방문 후 중국 제3지역 또는 항만에서의 검역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 전국 검역소 입국장에서는 입국하는 모든 여객선 승객에 대해서 발열감시카메라를 통한 발열검사 및 건강상태질문서를 확인합니다.
-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의 잠복기로 인한 검역의 한계를 인지하고, 입국검역과 지역사회와의 감염병관리 연계*를 추진 중입니다.

* 중국에서 입국한 내·외국인의 해외여행이력 정보를 14일 동안 일선 의료기관으로 공유하여 지역사회 의료기관에서의 신속한 의심환자 구분 가능

Q21. 중국은 오염지역으로 지정되어 관리 중인가?

- 중국 전체로 오염지역을 확대 지정하여 검역관리 수행 중입니다.(20.1.28.~)

<접촉자 관련>

Q22. 접촉자 범위는 어떻게 설정하는가?

- 접촉자는 환자의 증상발생기간 중 항공기, 공항, 의료기관, 일상생활 등에서 환자와 접촉한 인원을 대상으로 노출 정도와 보호구 착용 여부에 따라 설정합니다.

Q23. 항공기 내 접촉자 범위기준은 무엇인가요?

- 항공기 탑승한 환자 중심 전·후 3열의 승객을 능동감시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총7열). 감염병 환자 전파를 막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 국제항공수송협회(IATA), 국제민항기구(ICAO) 공동 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전문가 자문결과에서도 이러한 분류는 근거에 합당한 조치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Q24. 환자가 확진되면 항공기 내 같이 탄 접촉자(승객) 조사는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접촉자는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 환자가 확진되면 동승항공기의 근접접촉자 및 공항 내 접촉자는 좌석번호 및 공항 CCTV 등을 확인하여 중앙역학조사관이 접촉자를 분류, 확인하게 됩니다.

- 접촉자는 DUR을 통해 의료기관으로 명단이 공유되며, 거주지 소재 시·도로 통보하여 감시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게 됩니다.
- 접촉자로 확인되면 거주지 보건소에서 연락드려 증상 여부 확인 등 조치하게 됩니다.

<감염병 문의 관련>

Q25.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떤 바이러스인가요?

- 코로나 바이러스는 동물 및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바이러스로, 그중 사람에게 전파가능한 사람 코로나바이러스는 현재 6종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중 4종은 감기와 같은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이며, 나머지 2종은 각각 MERS 코로나 바이러스와 SARS 코로나 바이러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중국 우한시 폐렴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전파된다고 알려졌으며,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공개된 염기서열분석을 통해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박쥐유래사스 유사 바이러스와 89.1%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Q26. 확진자도 폐렴은 없는데, 본 질병의 공식 용어는 무엇인가요?

-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을 질병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명명법도 2019 신종코로나바이러스(2019-nCov) 감염증입니다.

<치료>

Q27. 확실한 치료제가 없다던데, 어떻게 치료를 하고 있나요?

- 아직 백신이나 완치 치료제는 없습니다. 증상에 대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Q28.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은 백신이나 치료제가 있나요?

- 현재 알려져 있는 백신이나 치료제는 없으며, 치료는 증상
따른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기타>

Q29. 조사대상 유증상자 조치는 무엇인가요?

- 역학조사를 통해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된 분들은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 입원하여 진단검사를 받습니다.

Q30. 외국인 등이 입국 시 증상이 있어도 신고 안할 경우 대책은
무엇인가요?

- 중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국 시 다국어(중국어,
영어)로 작성된 행동수칙 홍보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에서는 외국 여행력 등에 대해 반드시 질문할 수 있
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입국자는 중국 여행력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DUR/ITS 시스템을 통해 의료기관에 입국자 정보를 제공하
며, 이를 통해 의료기관 방문 시 환자를 구분하여 진료, 신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Q31. 중국 보건당국과 정보교류의 구체적 방법은 무엇인가요?

- 세계보건기구의 국제보건규약(IHR)에 따라 지정된 각 국가 공식 연락담당관(National Focal Point)을 통해 중국과 정보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한-중 질병관리본부 간 소통채널과 현지공관의 채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Q32. 중국 의료진이 확진되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의 의료인은 안전할 수 있는가요?

- 의료진은 항상 감염병에 노출되고 있어 높은 수준의 감염관리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국가지정격리병원은 음압실과 보호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충분히 훈련된 의료진이 있습니다. 또한 최상의 감염방지를 위해 노력 중입니다.

* 개인보호구(레벨D 세트, N95 호흡보호구, 일반마스크 등)를 지원하고 있음

- 아울러,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은 전담 감염관리팀에서 병원 내 감염예방 및 환경개선을 위한 교육·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감염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Q33. 위기평가회의에서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단계로 상향조정하게 된 근거와 내용은?

- 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감염병의 제한적 전파 가능성이 매우 높아 위기평가회의를 통하여 '주의'에서 '경계'단계로 상향 조정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의 중앙방역대책본부 운영은 지속하되, 보건복지부에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여 유관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관련 예산 확보 등 범정부적으로 대응 체계를 강화합니다.

Q34. 세계보건기구에서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을 선포하게 되면 무엇이 달라지게 되는가요?

- 긴급위원회를 개최하여 질병 특성을 규정하고, 현재 상황과 위험도 평가,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 등이 발표됩니다. 이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정으로 각국은 권고사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Q29. 중국을 경유하는 전체 국제선의 승무원들이 마스크를 착용해야하나요?

- 현재 중국뿐만 아니라 해외 여러 국가에서 확진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해외여행객과 장시간 같은 공간에 함께 있는 항공기 승무원의 경우 감염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드리나, 해당 항공사의 감염예방 규정에 따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올바른 손씻기와 기침예절 등 감염 예방 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정보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http://www.cdc.go.kr>)를 참고하세요.

동 지침은 기본 가이드라인으로서 해당 부처·기관·사업장 등 사정에 따라 적합하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유행대비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등 대응 지침

2020. 2.



질병관리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

목 차

I. 목적 및 기본방향

1. 목적
2. 기본방향

II.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 조치사항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
2. 감염예방을 위한 관리 철저
3. 돌봄 종사자
4. 의심환자 발견시 조치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_대응절차 지침상, 신고 대상 등의 기준 변경 시, 관련내용 반영예정

I 목적 및 기본방향

1. 목 적

□ 2020년 1월 20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첫 확진환자가 보고된 후, 지속적인 증가로 인한 지역사회 확산에 대비하여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관리대응절차와 조치사항을 마련하여 피해를 최소화

* 집단시설: 학교, 사업장, 청소년·가족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등

** 다중이용시설: 도서관, 미술관, 공연장, 체육시설, 버스·철도·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쇼핑센터(대형마트·시장·면세점·백화점 등), 영화관, 대형식당, 대중목욕탕 등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증상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주로 있으며, 폐렴, 호흡부전 등 중증경과도 있을 수 있음

□ 본 지침에서는 시설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의 대표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자')의 역할 등을 제시함

2. 기본방향

□ 다수인이 집합하거나 이용하는 각종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리 체계” 구성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감염 예방을 위해 시설이용자, 시설종사자, 기타 방문객을 위한 위생관리 철저 및 관련 인프라 지원

□ 시설 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환자(의심환자 포함) 발생시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고, 추가환자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

- 시설 관리자와 유관기관*(시도, 시군구 보건소 및 의료기관) 간 비상 연락체계 유지 및 상황 발생시 즉시 대응
 - * 관내 보건소, 인근 선별진료소, 콜센터(☎지역번호+120 또는 ☎1339)
- 시설 조직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증상 신고접수 담당자'를 지정하여 시설 이용객 및 기타 방문객 중 증상자의 신고 접수
- 시설 종사자 대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질병정보 및 감염 예방수칙, 행동요령 교육

2. 감염예방을 위한 관리 철저

- 중국을 다녀온 직원 및 이용자는 입국 후 14일간* 한시적 업무 배제 또는 이용(등원) 중단**
 - * (예시) 2월 6일 15:00 입국자는 2월 20일(D+14)까지 업무 배제
 - **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은 결석시 출석 인정, 격리 아동 임시보육 등
- 업무 배제된 자는 되도록 14일간 타인과의 접촉 및 거주지 밖 외출을 자제하고,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관찰
 - * 의심 증상 발생 시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로 문의
- 사업장 내 중국에서 입국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 선제적 예방을 위해 2주간 휴가나 재택근무를 부여하거나, 휴업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권고
- 시설이용자, 시설종사자 및 기타 방문객 대상 위생수칙 교육·홍보
 - 직원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수칙,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감염병 예방 교육 실시 [붙임 1~3]
 - 손씻기, 기침 예절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을 위한 위생수칙 등 각종 홍보물*을 시설 내 주요장소에 부착
 - * 관련 홍보물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kcdc.go.kr)에 게시된 자료 활용

□ 감염 예방을 위한 위생 관리

- 시설 내 화장실 등에 개수대, 손 세척제(비누, 손소독제 등)와 휴지 등을 충분히 비치
 - 손 씻기 및 세안 후에는 종이타월이나 개인용 수건 등으로 깨끗이 닦도록 함
 - 시설 내 휴지를 비치하여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기침시 사용한 휴지를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쓰레기통을 곳곳에 비치
 - 버스·철도·지하철·택시 등은 개찰구·손잡이·화장실 등 소독 철저 및 종사자에게 마스크 착용
 - 시설 내 주요 공간의 청소와 소독을 강화
 - 특히, 밀집도가 높은 장소와 고위험군* 사용 공간에 대한 청결을 강화하도록 함
- * 기저질환을 가진 환자군(당뇨, 만성폐질환, 암, 신부전 및 면역기능 저하자)
- 시설 내 마스크, 체온계 등 감염예방을 위한 필수물품을 충분히 비치하고, 이용객 중 희망자에게 마스크 배포
 - 의심환자 발생시, 관할 보건소의 조치가 있기 전까지 의심환자가 대기할 수 있도록 시설 내 격리공간을 확보하도록 함
- * 격리공간은 문을 닫을 수 있고 환기가 잘되는 공간으로 지정 및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만 격리공간을 출입할 수 있도록 제한

3. 돌봄 종사자

- 요양보호사·간병인·가사도우미 등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경우도 중국에서 입국한 경우는 **14일 경과 후 서비스 제공으로 관리 철저**

4. 의심환자 발견시 조치

- 시설 내 의심환자 발견 시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
 -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의심증상)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주로 있으며, 폐렴, 호흡부전 등 중증경과도 있을 수 있음
- 보건소에서의 조치가 있기 전까지, 의심환자에 대해서는 마스크를 씌우고, 확보된 격리공간에서 대기하도록 함
 - * 보건소 도착 전, 환자와 접촉하는 담당자도 마스크 착용
 - 임시 격리공간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시·도(보건소)지시 사항에 따라 수행
 - * 즉시 진료를 받도록 이송하거나, 보건소로 내소토록 함
 - 이송시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의심환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함
- 의심환자의 보건소 이송 이후에는 알코올, 락스 등의 소독제를 이용하여 환자가 머물렀던 격리 장소를 청소